

國家論의 概要(續)

鮮于

故로左에는 根本的 分類에 就호야 一言코져 호노니

一. 君主國體 此國體는 一個의 身體를 有호는 自然人的 意志로부터 統治호는 國家라. 君主 國體에 在호야 一個의 人格者는 國家의 意志를 代表호고 國家의 主權은 彼の 固有에 屬호야 過去或은 現在의 人又는 人人으로 讓與호는 者 아니오, 君主 國體된 以上은 君主의 統治權은 君主의 固有에 屬호고 他的 意志로 傳受호는 者됨이 不可호니 卽 君主 國體의 主權은 君主의 固有호는 바오, 他的 人又는 人人으로 授與호는 不可호지라. 故로 古代에는 此를 天으로 與호며 又는 神이 授호는 權이라. 稱호고 君主도 神或은 神의 子孫이라고 尊崇호였는니라.

此를 要호건되 君主 國體의 起源은 古代에 屬호야 偉大호는 人物을 神이라. 尊崇호는 宗教的 信仰 及其 慣習으로 因호는 者라. 第十九世紀의 中까지 伊太利 中部에는 君主獨裁호고 羅馬法王의 政治는 神權制라 호얏고 次에는 君主를 神이라 崇拜호는 信仰이 衰微하고 封建의 思想이 起호야 君主는 國家의 所有主로 看做호고 土地 及 人民은 君主의 私有財產으로 看做치 아니호는 歐洲에도 最古의 事는 아니라 以上과 如히 君主를 神又神의 代表者로 信호고 或은 君主를 國家의 所有主라 호는 觀念은 君主로써 國家의 上又는 國家의 外에 在호는 者로 知호는 畧이오, 國家는 全히 人民의 組織으로 共同生活의 狀態라 호는 眞理를 發揮호는 不足호는 이로다. 然이나 社會가 一種의 宗教的 信仰을 管理호고 又는 封建的 思想에 基호는 公法私法의 區別을 不知호는 間은 前述의 君主 國體는 國家를 組織호고 又支保호는 可호는 唯一의 制度라 호노니 佛國王 「류이」 第十四世(一六四三年 - 一七一五年)에 國家는 卽 朕이라 言호는 神權主義와 封建主義를 混合호는 當時에는 君主의 思想으로 最能호는 代表라 云호는 나니라.

近世에 君主 國體의 概念은 神權主義가 아니며 又封建思想도 아니오, 純然호는 政治的 基礎의 上에 立호야 專히 國家의 本質로 基호야 統一케호는 人民 共同 團體의 元首로 君主를 國家의 一員又는 國家의 機關이 되는지라 例컨

되 人의 頭는 有機體의 一部分又는 其 一機關이 되는 全體의 首腦機關으로 全體를 統一하고 又此를 督制함과 如하니 普國의(푸레더릭) 大王 (一七四〇年 - 一七八六年)이 王은 國家의 高等臣僕이라 함은 卽 君主는 神도 아니오, 又所有主도 아니라 하는 意義를 喝破함이라. 然이나 現在의 君主 國體는 歷史의 產物로 單히 理論에서 發生한 者 아닌 즉 實際는 尙今도 神權主義 封建主義와 最近의 思想을 混合한 者 有한지라. 故로 前英國의 國體를 共和國體라 斷言함도 理論 上으로 謂함이오 實際 上에는 英國은 依然한 君主 國體라 可謂함지며 法律 上에도 英國王이 尙今까지 英國 全 國土의 所有主가 됨은 法律家가 能知하는 바라 然則普國, 露國又는 彼日本과 如한 君主 國體는 一概最近의 思想 畧으로 見하기 不可함지라.

如何하든지 君主 國體의 第一의 特徵은 君主가 國家의 最高權을 固有한 者로 法律의 裁可又는 不裁可와 國際 上의 條約, 宣戰媾和, 軍隊의 指揮, 大臣의 任命, 獨立命令, 赦免 等の 特權은 君主 固有의 權으로 認識하는 間은 君主 國體는 儼然存在하다. 可謂함지며 君主 國體의 第二의 特徵은 君主가 總히 國家 權能의 泉源이 되고 君主는 一人으로 國家의 職掌을 悉自執行하기 不可함 故로 君主 國體된 以上은 國家의 立法權, 司法權, 行政權은 皆君主에게 屬치 아니함이 不可하니 詳言하면 法律案을 經過하고 裁判을 行하며 百般 行政 事務를 行하는 特別의 機關을 管掌케 함을 可得함지니 是 等の 機關은 君主의 意志에 存在하고 君主의 委任으로 活動하고 君主의 名義로 執行치 아니함이 不可하며 君主 國體의 第三의 特徵은 憲法의 修正變更에 君主의 意志를 從치 못함지니 若君主의 意志가 無하거나 或은 君主의 意志를 反抗하며 憲法의 修正 變更을 得함은 其國體의 名義의 如何를 不拘하고 君主 國體라 謂하기는 得치 못함지라. 佛國革命의 際에 公然共和制를 宣言함은 一七九一年 九月이라도 實은 其 前年 九月 三日의 憲法을 變更할 時에 君主의 裁可를 不要함 故로 佛國에는 當時에 既히 君主 國體가 亡하고 共和國體를 成함지라. 又英國王의 法律 不裁可權도 一七〇七年 以來로 今日에 至하기까지 二百年間을 用하고 又將來라도 用하기 可得함 希望이 有함은 是亦英國이 既히 共和國體됨에 足함 證이니라.